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노후주택 등의 상수도 급수설비 개선과 수도물 수질 향상을 위하여 옥내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관 세척·갱생의 효과 문제와 교체의 과도한 비용부담 및 불편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에 수도관의 세척·갱생, 교체뿐만 아니라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우수한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깨끗한 수도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을 “옥내급수설비”로 용어를 정의하고 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을 옥내급수설비로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2조제1호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

- 나.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와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량”이라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 다.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권고 및 비용의 보조 대상으로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개량”으로 변경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라. 급수설비 개량비용의 지원 시설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와 동일하게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함(안 제39조제4항).
- 마. 수도요금 요율표에 제곱미터(m²)로 잘못 표기된 사용량의 단위를 세제곱미터(m³)로 수정함(안 별표 1).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613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7일

발의의원 : 성길용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영희, 이상복 의원

□ 제안이유

- 노후주택 등의 상수도 급수설비 개선과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하여 옥내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관 세척·갱생의 효과 문제와 교체의 과도한 비용부담 및 불편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에 수도관의 세척·갱생, 교체뿐만 아니라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우수한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을 “옥내급수설비”로 용어를 정의하고 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을 옥내급수설비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1호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
- 나.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와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량”이라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 다.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도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권고 및 비용의 보조 대상으로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개량”으로 변경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라. 급수설비 개량비용의 지원 시설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와 동일하게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함(안 제39조제4항).
- 마. 수도요금 요율표에 제곱미터(m²)로 잘못 표기된 사용량의 단위를 세제곱미터(m³)로 수정함(안 별표 1).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수도법」 제21조
 -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2조제6호, 제4조, 제5조제1항
- 현행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2조, 제39조, 별표 1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12. “개량”이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9조제1항 중 “급수시설”을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을 “개량을”로, “필요한 비용”을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을 “급수설비 개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85제곱미터”를 “130제곱미터”로 한다.

4.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환산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

5.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별표 1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 종	사용량 (m ³ /월)	요 금(원)			
		2020년 1월~6월	2020년 7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2022년6월	2022년 7월~

별표 1 중 “(m²/월)”을 “(m³/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
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
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
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
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
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설>

④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
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

② -----

- 개량을 -----

-----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

③ ----- 급수설비 개량-----

1.·2. (현행과 같음)

3.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
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④ ----- 옥내급수설비의
개량-----

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1. ~ 3. (생략)

4.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설>

5.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
하의 공동주택

-----.

1. ~ 3. (현행과 같음)

4.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실제 거주현황을 기
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환산연면적이 130제
곱미터 이하)

5.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
하의 다가구주택

6. ----- 130제곱미터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⑥ ~ ⑨ (생략)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제거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량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제5조(사업대상) ①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써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 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登記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 5. (생략)

「오산시 수도급수 조례」 (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貯水槽)·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9. “주 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원인자 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5.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 (제24조제2항 관련)

업종	사용량 (m ³ /월)	요금(원)			
		2020년 1월~6월	2020년 7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2022년 6월	2022년 7월~
가정용	1~20	450	500	540	580
	21~30	630			
	31이상	900			
일반용	1~50	800	860	910	960
	51~100	940	1,020	1,070	1,130
	101~300	1,100	1,190	1,240	1,290
	301~500	1,200	1,300	1,340	1,380
	501이상	1,250	1,350	1,390	1,440
욕탕용	1~500	680	730	800	870
	501~1,000	800	860	930	990
	1,001~1,500	920	990	1,040	1,090
	1,501이상	1,000	1,080	1,110	1,160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일반용 사용량(m³/월) 중 1~50의 요금만 적용